비상경제장관회의
24-5-4
(공개)

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

2024. 3. 13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 서

Ⅰ. 추진배경 1

Ⅱ. 분야별 규제혁신 및 애로해소 방안 2

1. 핀테크 2

2. 로봇 · 디지털 전환 5

3. 인공지능(AI) · 통신 10

4. 헬스케어 12

5. 첨단전략산업 · 우주 15

6. 생활밀착 분야 17

Ⅲ. 과제별 향후 추진계획 21

Ⅰ. 추진배경

□ **기업**의 **끊임없는 혁신**을 통해 **부가가치**를 창출하고 **일자리**를 만드는 **역동경제 시스템 구축**을 위해서는 **신산업·첨단산업 경쟁력 제고**가 핵심

○ **신기술 기반 제품·서비스**의 **시장진입을 촉진**하여 **관련 산업을 창출·활성화**하고 우리 기업들의 **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**을 **뒷받침**할 필요

□ 기업들은 **협소한 영업범위**, **과도한 사업요건**(예: 시설, 자본금 등), **신기술 관련 기준 미비** 등으로 **새로운 비즈니스 진입** 및 **사업 확장**에 **애로**

<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규제·애로 유형 >

유형	현장의 목소리
❶**협소한 영업범위**	해외 온라인 쇼핑몰 이용이 증가하는데도, A사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에스크로(Escrow) 서비스 활용이 불가능 → 해외결제서비스 범위가 제한
❷**과도한 사업요건**	장롱면허 소지자 대상 도로연수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중인 B사는 일반 운전면허학원과 동일한 강의실, 기능교육장 등 시설 요건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
❸**신기술 관련 기준 미비**	방역로봇 생산 C사는 식당 등에 방역로봇을 판매할 계획이나, 로봇 소독 기준 부재 및 이에 따른 소독증명서 발급이 불가능 → 로봇 구입 수요업체 확보 곤란

○ 아울러, 사업 초기단계 **부족한 민간 수요 보완***, **데이터 표준화****, **인증 부담 경감** 등 **신산업 확산**을 위한 **정책 지원 요구 지속**

* (예) 디지털헬스케어, 우주산업 등 신산업 분야 시장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 역할 필요
** (예) 제조현장의 데이터가 공정·장비별로 상이하여 데이터 연계·분석 및 활용 저조

□ 정부는 **시장진입 및 사업 확산**에 **어려움**을 겪고 있는 **현장의 목소리**를 **적극 반영**, **속도감** 있게 **문제를 해결**함으로써 **신산업 활성화 뒷받침**

○ **경제단체·협회 건의 수렴, 신성장 민관협의체*** 등을 통해 **우선 개선 가능**한 **규제·애로 발굴** ⇨ **금번 안건**에서 **발표, 조속히 이행**

* '23년 하반기 중 17차례 민관협의체를 통해 로봇, 우주산업 등 신산업 현장애로 발굴

○ 앞으로도 **중기·투자 익스프레스, 신성장 민관협의체** 등을 통해 **지속적**으로 **규제·애로 해소** ⇨ **분기별 1회 개선방안 마련·발표 계획**

Ⅱ. 분야별 규제혁신 및 애로해소 방안

◇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 및 애로 발굴·신속하게 개선

1 핀테크 (5건)

1 외환서비스 업종 확대 기재부

○ **(현황)** 현행 외국환법령은 전자금융거래법 상 **7개 전자금융업종** 중 **3개 업종**에 대하여만 **외국환업무 허용***

* 전자자금이체업,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, **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**, **전자화폐발행관리업**, **전자지급결제대행업**, 결제대금예치업, 전자고지결제업

- 다국적 전자상거래, 국세납부 등의 증가로 **결제대금예치업***과 **전자고지결제업****에 대한 **외국환업무 수요가 확대**되는 반면,

*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이용시 소비자의 구매 안전을 위한 에스크로(Escrow) 서비스

** 해외 체류중 국내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시 납부할 수 있는 전자고지 서비스

- 외국환업무로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해당 거래시마다 **매번 외국환거래법상 한국은행 신고**가 필요하여 **불편 야기**

○ **(개선)** 전자금융법상 등록된 **결제대금예치업자**와 **전자고지결제업자**에 대해 **외국환업무 허용**

⇒ **신규업체의 외환서비스 진입이 활성화**되고, **전자상거래 업체와 핀테크 기업간 협업**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출시 기대

【 조치계획 】「**외국환거래법 시행령**」 및 「**외국환거래규정**」 **개정('24년)**

2 거주자 간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추진 기재부

○ **(현황)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**은 **타인 간 양도가 금지**되고 **재화·용역 구입에만 사용**하는 데 국한*

* 타인간 외화표시 전자지급수단 양도는 외화송금의 효과 발생

- 양도 금지로 인해 ❶해외여행시 **나눠내기**(더치페이) **불가**, ❷**환전·재환전 수수료 중복 발생**, ❸**형평성 문제*** 등 민원 발생

* 원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거주자간 양도를 허용

○ **(개선) 원화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 허용 한도**(200만원) 내에서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 서비스를 **규제샌드박스 상정 추진**

【 거주자간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 서비스 】

현행	개선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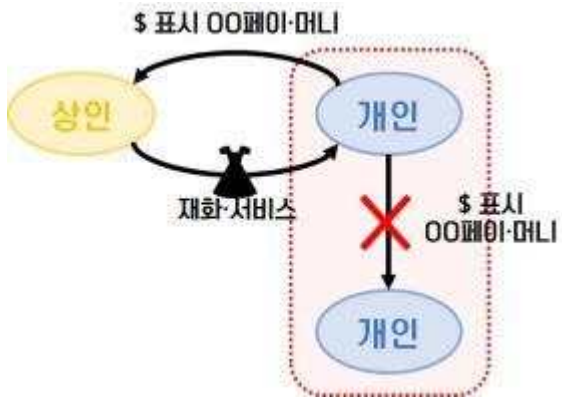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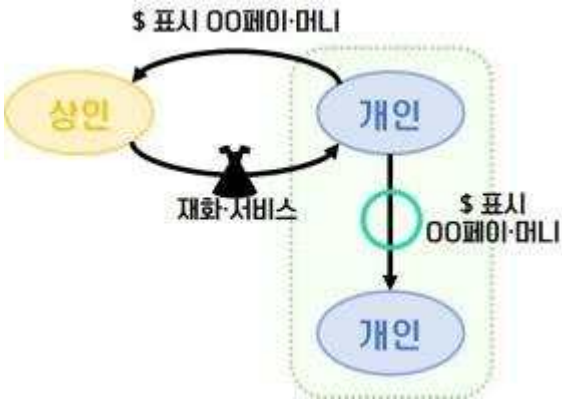

⇒ **해외여행자**에 대한 **다양한 외환서비스***가 가능하여 **편의 제고**

* (예) ①해외여행자들 간 나눠내기(더치페이), ②어머니가 해외여행시 사용 후 남은 외화 선불금을 자녀의 다음 여행시 활용 등

【 조치계획 】 금융규제 샌드박스 상정('24.上)

3 송금목적의 단기 예치 허용 기재부

○ **(현황)** 현행 외국환거래규정 상 **소액해외송금업자**는 고객으로부터 **건별로 자금을 수령**하여 **예치 없이 즉시 이체** 필요*

* 예치 허용시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재하여 소비자보호에 취약

- **희망환율** 또는 **일정 시점** 도달시 **자동송금**되는 서비스가 **불가능**

○ **(개선) 일정 금액/기간 이내 예치**를 **허용**하여 특정 환율 또는 시점에서의 **예약송금 서비스**가 **가능**하도록 규정 개정

⇒ **해외여행자·유학생** 등 국민의 해외송금 **가격·시점의 선택권** 제고 통한 **후생 증진**

【 조치계획 】「**외국환거래규정**」 **개정('24.上)**

4 비금융회사 외환서비스 확대 기반 마련 기재부

○ **(현황)** 소액송금업, 온라인환전 등 **외환서비스 시장이 성장**하고 있음에도 불구, **불투명한 모니터링**으로 인해 **시장 활성화**에 제약

- 이는 **핀테크 업체**들의 **자금 경로** 등에 대한 **모니터링 체계 흠결***로 인해 **은행권과의 협업**이 **활발하지 못**했기 때문

* (소액송금업) 송금비용 절감을 위한 프리펀딩·풀링등 국경간 지급방식에 대한 규율 부재, 업체간 합산 개인별 송·수금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부재
(기타) 환전업 거래실적 통보, 전자지급결제대행업,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·관리업에 대한 보고·통보 규정 未이행

○ **(개선) 소액송금** 관련 외국협력업자와의 **국경간 지급거래** 및 **개인별 송·수금 내역**에 대한 **외환전산망 보고** 신설 → **신뢰 제고**

- 또한, **환전업, 전자지급결제대행업** 등에 대한 **보고 및 통보 체계**를 **본격 시행***하여 외환거래의 **투명성 확보**

* 한국은행–관세청 간 환전영업자 거래실적에 대한 통보 및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·관리업에 대한 외환전산망 보고서 신설 및 국세청·금감원 통보 추진

⇒ 국내외 간 지급서비스에 대한 **보고체계 정비** 통해 **신사업 외환서비스 활성화 발판** 마련

【 조치계획 】「**외국환거래규정**」 **개정('24.上)**

5 금융·보험사의 보유 주식 의결권 제한 완화 공정위

○ **(현황)** 현행 공정거래법은 **대기업집단 소속 금융·보험사**의 **비금융·보험사 보유 주식**에 대한 **의결권 행사**를 **엄격히 금지**

- 이에, **기존 금융·보험사**는 **핀테크** 등 금융 밀접관련 회사에 대한 **의결권 행사**가 **제한***되어 **금융 신산업 진출**이 **어려움**

* 다수 핀테크 업체가 표준산업분류상 '금융 및 보험업'이 아니라 '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' 등으로 분류되어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·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

○ **(개선)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·보험사**가 **핀테크** 등 **금융 밀접 업종**에 대해서도 **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***가 **가능**하도록 개선

* (現) 피취득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→
(改) 피취득회사가 금융·보험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

⇒ 기존 금융·보험사의 **금융 신산업 투자 활성화**로 **금융혁신 촉진** 및 **금융산업 경쟁력 제고**

【 조치계획 】「공정거래법」 개정안 발의('24.4분기)

2 로봇 · 디지털전환 (8건)

1 방역 로봇의 시장진입을 위한 제도 정비 질병청

○ **(현황)** 현행 소독 관련 **법규상 근거 미비**로 UV살균* 등 **로봇을 활용한 소독**에 대해서는 **소독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**

* 자외선(Ultra Violet)을 이용하여 미생물, 세균 등을 파괴

- **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**하여 **소독 증명서를 발급**받아야 하는 **숙박시설·음식점** 등 업장에서 **방역 로봇 활용 곤란**

○ **(개선) 효과성·안전성 검증기준, 방역로봇**의 **활용처***, **관리자의 교육 수료** 등 규정을 마련하여 **로봇 활용 방역 서비스 제도화** 추진

* (예) 감염병 위기 시 공공영역에 선제적으로 활용 등

- **방역 로봇**을 활용하여 **기준에 맞게 소독을 실시**하는 경우에는 **인력 소독과 동일하게 소독 증명서 발급**

⇒ **방역 관련 신기술의 시장진입**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

【 조치계획 】「방역소독지침」 개정 추진('24.4분기)

2 경찰관서의 순찰 로봇 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경찰청

○ **(현황) 해외 주요국***에서는 **순찰 로봇을 활용한 치안 서비스**를 도입하고 있으나, **국내에는 규정 미비**로 新서비스 창출에 제약

* (美) LA·뉴욕 등 경찰관서에서 지하철역 순찰 로봇(K5) 도입
(中) 베이징시·룽난시 순찰 로봇(메이바오, 두두) 도입

○ **(개선)** 경찰관서에서 **순찰 로봇을 사용**할 수 있도록 **실증특례*** **결과** 등을 바탕으로 **내부 지침을 마련**

* 무인순찰 로봇 시스템 개발 및 실증('21~'24, 경찰청·과기부)

⇒ **로봇 활용 치안 서비스**의 **시장진입**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
【 조치계획 】「순찰로봇 운용을 위한 세부지침」 제정('24년)

3 의료용 로봇의 해외 진출 지원 강화 산업부

○ **(현황) 국가별로 제각각**인 **안전인증 절차·요건**(필수적 임상데이터 요구 등)으로 **의료용 로봇*** **수출에 어려움**

* 글로벌 서비스 로봇 시장 111억불 규모, 이 중 의료용 매출비중이 38.7%로 1위(IFR, '21)

○ **(개선)** ❶**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대상**으로 임상 데이터 등 **의료용 로봇 실증 지원**을 대폭 강화

* 지능형로봇 보급·확산사업內 서비스로봇: ('23년) 260억원 → ('24년) 300억원

- ❷의료용 로봇 분야 **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** 및 **수출기업과 전문가 간 매칭**을 통한 **맞춤형 지원** 확대

* 수출기업 발굴(유관기관) → 전문가 매칭(지원단) → 상담·자문(전문가) → 인증획득

⇒ **실증 지원 확대** 및 **신속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**을 통해 **우리 의료용 로봇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**

【 조치계획 】 기업 대상 해외인증 취득 全과정 지원(지역별 설명회·간담회) 확대('24년)

4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 로봇 보급·확산 중기부

○ **(현황)**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**서빙로봇 보급사업**(스마트상점)을 추진 중이나, **단순 인력 대체**에 머물고 있는 상황

- **서비스 로봇 조기 확산** 위한 **로봇 보급사업** 개선 필요

○ **(개선)**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위해 서빙로봇 단독 지원에서 **업종별 패키지 보급(서빙로봇 + 테이블오더 + 경영관리SW 등)**으로 **개선**

【 (참고)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개요 】

▷ **(사업 목적)** 소비·유통환경의 비대면·온라인화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

▷ **(지원 내용)** 키오스크, 서빙로봇 등 '27년까지 5.3만개社 지원

▷ **(예산)** ('23년) 313억원(로봇 450대 등) → ('24년) 344억원(로봇 500대 등)

⇒ **서비스 로봇 생태계 활성화** 및 **소상공인 경쟁력 제고**

【 조치계획 】 서빙로봇 및 연관 SW 패키지 보급 지원('24년)

5 스마트팩토리 구축시 필요한 정보, 컨설팅 등 제공 중기부

○ **(현황)** 스마트팩토리 도입시 **적합한 공급업체** 선정, **업종별·업체별 사전 준비사항** 등 필요한 **기초정보 습득**에 **애로**

▶ **A社** "스마트공장을 처음 도입할 때, 본인이 어떤 위치인지 파악하기도 어렵고,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보를 얻을 수 없었음"

○ **(개선)**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할 **제조기업**에 **최적의 기술공급기업**과 **전문가**를 **추천**할 수 있도록 '**제조혁신**(DX) **포털**' 구축

- DX 포털에서 **기술공급업체** 제안서를 **비교·선택**할 수 있도록 하고 **전문가 자문**(DX멘토단)을 지원하는 등 **기업 수준별** 맞춤 지원('24.下)

【 (참고) 제조혁신(DX) 포털 구조도 】

⇒ 중소 **제조기업**들의 **디지털 전환**을 가속화

【 조치계획 】 제조혁신(DX) 포털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(ISP) 수립 착수('24.上)

6 제조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중기부

○ **(현황)** 제조현장에서 수집되는 **데이터 형식이 공정·장비별로 상이**하여 표준화된 데이터를 통한 **분석 활용에 한계**

▶ **B社** "제조데이터 量은 많지만 빅데이터 활용한 AI 분석이 어려운 이유는 활용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수집·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"

○ **(개선)** 주요 **공정·장비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**하고 **현장에서 쉽게 활용**하도록 「**50개 공정·장비 제조데이터 표준모델***」 마련

* 공정·장비별 제조데이터 정보, 표준화 방법 등 안내서, 참조모델, 사용례 등

⇒ **제조 데이터**의 **분석·활용**을 통해 **제조현장의 생산력 제고**

【 조치계획 】 한국형 제조데이터 활용 표준모델 50개 마련('24.下)

7 항만 자동화시 국내기술 활용 확대 해수부

○ **(현황)** 항만운영에 필요한 **크레인, 자동운반차량 핵심부품**(터미널 운영시스템 분야 제외)은 **대부분 수입에 의존**하고 있어 해외 항만 대비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**기술 경쟁력 확보가 어려움**

* '00년대 이후 낮은 가격경쟁력에 따른 국내 항만장비산업 시장 축소로 기술개발 감소 및 기술격차 발생

▶ **장비협회** "국내에는 크레인 장비제작 전문기업이 全無, 대부분 중공업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오다 중국의 저가공세 이후 중공업사도 자체개발 중단"

▶ 中이 가격수요기반으로 시장을 견인, 유럽日도 경쟁에 가세 중, 운영시스템은 미국이 주도

○ **(개선)** 부산항 진해신항 등 신규 개발되는 주요 항만을 대상으로 **국산장비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기반*** 마련('24上, 해수부)

* '스마트 메가포트 미래비전' 전략 중 국내 항만장비 확대 항목 포함 예정

- 현재 추진 중인 **광양항 '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'** 등에 **국내 산업 중심의 항만장비 도입** 추진

⇒ 스마트 항만 확대에 맞추어 **국내 항만기술산업 경쟁력 강화**

【 조치계획 】 신규 개발 주요 항만(광양항 등)에 국산 항만장비 도입·활용 확대('24~'25)

8 수직농장 시설에 적합한 지원제도 마련 농식품부·기재부

○ **(현황)** 수직농장 등 **신개념 농업 시설**을 보다 적절하게 관리 및 육성하기 위해 **관련 법령** 및 **제도를 정비**할 필요

❶ (부담금) **수직농장**은 **농산물생산시설임**에도 불구하고 **해당 부지**를 **농지 전용**(轉用)으로 **간주**하여 **농지보전부담금*** 부과

* 농지 전용으로 농지 면적을 감소시킨 자에게 부담하는 부담금(공시지가 30%)

- **ICT와 결합한 비닐하우스** 및 **고정식온실** 형태의 스마트팜은 **농지 이용행위**에 **포함**되었으나 **수직농장**은 **미포함**

❷ (기자재) **주요 농업용 기자재**는 **부가가치세 환급**을 **적용**받으나, **수직농장 기자재**(LED, 냉난방 시설 등)는 **未 적용**

* 농민이 농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제도(조특법 제105조의2 등)

▶ **D社 등** "과거 농업개념에 기반한 법·제도는 새롭게 도입되는 스마트농업을 포괄하기 곤란, 농민·농가·농업경영체 등 정의, 수직농장의 개념·분류 등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춰 새로이 규정할 필요"

○ **(개선)** 수직농장의 특성에 맞는 **지원제도 구축** 추진

❶ (부담금) **가설건축물 수직농장**을 ①**'타용도 일시사용 허가**(농지법 제36조)' 대상에 **추가**하고 **허가기간**을 **확대**, ②**일정지역*** **내 모든 수직농장**을 **농지이용행위**로 **인정** ⇨ **농지보전부담금 미부과**

* 「농촌공간재구조화법('24.3월 시행)」에 따른 농촌특화지구(농촌융복합산업지구)

❷ (기자재) **수직농장** 작물 **재배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검토**

❸ (정의·범위) 수직농장 지원제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**수직농장**의 **정의, 유형, 요건** 등을 새롭게 규정*

* 향후 신설되는 수직농장 규정에 따라 필요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 검토

⇒ **수직농장의 수익상승** 및 **투자확대**를 통해 **농업의 고부가가치화** 및 **수직농장 수출 확대**에 기여

【 조치계획 】 ❶ **「농지법령」 개정 추진('24)**
❷ **「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(조세특례제한법 하위법령)」별표5(환급) 개정 검토('24)**
❸ **「스마트농업법('24.7월 시행)」하위법령에 수직농장 관련 규정 신설('24.7)**

3 인공지능(AI) · 통신 (5건)

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(GS 인증) 제도 부담완화 과기정통부

※ Good Software 인증: SW 품질인증 제도, 국제표준 9개 주특성(효율성, 보안성 등) 검증

○ **(현황) AI 분야 신생 SW기업**(스타트업 등)에게는 **GS인증 기준·요건이 까다롭고 방대**하여 인증 획득에 애로

- 특히, **정보보호제품 사전인증***을 받은 제품도 GS인증 과정에서 **보안성을 추가로 검증**하는 등 **기업 부담 가중**

* 국가·공공기관에 보안제품을 납품할 경우, 안전성 확인을 위해 사전에 인증(CC인증, 보안기능확인서, 성능평가, 신속확인제)을 획득하는 제도

▶ **A社** "스타트업, 영세기업 입장에서는 품질 평가에서 보안성, 유지보수성, 호환성, 신뢰성 등을 모두 요구하는 GS인증을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"

○ **(개선)** GS 인증획득을 위한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, **정보보호제품 사전인증 발급 제품**에 대해서는 **보안성 평가 면제**

⇒ 인증부담 완화를 통해 **AI분야 신생기업** 등 **성장 촉진**

【 조치계획 】「SW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」 고시 개정('24.6월)

2 AI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AI 체험환경 조성 과기정통부

○ **(현황)** AI 서비스 **저변확대**를 위해 일상공간에서 **일반 국민이 AI 서비스를 체험**할 수 있는 **기회·공간 확충** 필요

※ AI 서비스 미이용, 사용 중단 사유로 '**경험·기회 부족**' 응답이 가장 많음 (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주관, '23.5.30~6.2, 「전국민 AI 일상화 실행계획」)

▶ **B社** "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이 의료, 통신, 교통 등 다양한 AI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 보고 AI 유용성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"

○ **(개선) 전국민 일상 속 AI 체감환경 조성**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는 **AI·데이터 활용 서비스*** 발굴·확산(※스마트빌리지 사업과 연계)

* 例) AI·데이터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, 재활용품 회수보상, 축사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('24)

【 (참고) 스마트빌리지 보급·확산 사업 개요 】

▷ **(주요내용)** 인구감소·고령화 등 **다양한 지역 현안 해결**과 **지역 균형발전**을 위한 **지자체 단위의 스마트 서비스 보급·확산** 추진

▷ **(사업방식/규모) 지자체** 자체 기획 및 수행(지특자율계정) / '**24년 1,039억원**(78개 지자체)

⇒ **AI 기술 대중화**를 통해 **AI 산업 생태계 구축** 및 **글로벌 경쟁력 강화**

【 조치계획 】 지자체 주도 AI·데이터 활용 서비스 과제 발굴('24.上)

3 파견관제 업무를 클라우드 기반 원격관제로 전환 과기정통부

○ **(현황)** 공공기관 내 **보안관제 센터**의 설치·운영 시 **전담인력 상주**토록 규정 → **비숙련 인력배치**로 **보안 수준 저하**

*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(보안관제센터의 설치·운영) 제3항

- 보안관제 업무는 통상 **전문업체에 위탁 운영**하나, 지방소재 기관은 **저임금, 지방근무** 등 제약으로 **숙련인력 확보 곤란**

▶ **C社** "지방 공공기관 등 경우 예산 등 이유로 초보인력이 파견되며 보안 수준 저하 초래.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원격관제 병행 검토 필요"

○ **(개선)** **원격**(클라우드) **보안관제**에 대한 **기술적 타당성·안정성 검증** → 이를 토대로 「**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**」 **개정** 검토

⇒ **보안인력**의 **효율적·탄력적 배치**로 **비용 절감** 및 **보안수준 향상**

【 조치계획 】 원격 보안관제의 기술적 검증 정책 연구용역('24.下)

4 CCTV 영상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보호위

○ **(현황)** 현행 「개인정보보호법」상 **공공장소 CCTV 영상정보**는 **가명처리 후** AI 개발에 활용하려는 **제3자에게 제공 가능**

- 다만, 영상·이미지 등 **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이 부재**하여 **제3자**가 **영상정보를 제공**받는데 **어려움*** 존재

* (예) 인파사고 위험 예측시스템 개발을 위해 영상 내 사람의 위치를 점으로 처리한 가명정보를 요청했으나, 지자체 담당자는 명확한 처리기준이 없어 정보제공 거부

○ **(개선)** **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을 연내 마련**하고, 영상정보 활용을 위한 **공공 CCTV 운영 주체와의 협의 지원**

⇒ **공공데이터를 활용한 AI 신서비스 개발 및 시장진입** 지원

【 조치계획 】「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」 개정(旣조치, '24.2월)

5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제조업 겸업 제한 폐지 과기정통부

○ **(현황)** 전기통신분야 매출액이 일정 이상*인 **기간통신사업자**는 **통신기기제조업 등 겸업** 시 **과기정통부 장관**의 **승인**이 필요

*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 300억 원 초과

○ **(개선)** **IoT·웨어러블 기기**와 **통신서비스** 간 자유로운 **연계·융합**을 촉진하기 위해 **통신기기제조업에 대해서는 겸업 제한 면제**

⇒ **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 시장진입** 및 **경쟁 활성화** 기반 조성

【 조치계획 】「전기통신사업법」 개정안 발의(旣조치, '23.11월)

4 헬스케어 (4건)

1 디지털 의료기기 특성에 적합한 관리체계 마련 복지부·식약처

○ **(현황)** **식약처 인허가**를 거친 **디지털 의료기기**의 **혁신의료기술*** 지정 이후 **절차 지연** 등으로 **의료 현장**의 **사용성 저하**

* 기술잠재성을 고려, 조건부 신의료기술 형태로 의료현장에서 사용가능한 기술

▶ **A社** "'23.2월에 디지털치료기기를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, 혁신의료기술 선정, 의료기관 사용신고 등 후속절차 지연으로 실사용 사례 無"

▶ **B社** "디지털 의료기술이 즉각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 필요하며, 디지털의료 제품에 특화된 관리체계 마련 필요"

- **혁신의료기술 선정** 이후 고시, 보험등재 등 **후속절차**의 **엄격함·복잡성** 등으로 **디지털의료기기 업계**의 **개선요구 지속**

【 現 혁신의료기술 평가 절차 】

구분		주요 내용
식약처 허가 단계		① 의료기기 제조·수입허가(식약처)
혁신의료기술 평가	신청	② 혁신의료기술 신청·평가(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) 및 선정(복지부 고시*) * 의료기술 사용 기간(보통 3년) 및 실시(처방)기관 고시
	신고사용	③ 혁신의료기술 실시기관(의료기관) 사용 신고(의료기관 → NECA) ④ 의료기관 사용, 건강보험 등재 여부 결정(심평원) 및 수행현황 관리(NECA)
	평가	⑤ 혁신의료기술 평가기간 내 신의료기술 평가(NECA) ⑥ 신의료기술 인정시 급여/비급여 행위 결정(※ 미인정시 사용중단)

- 또한 **현행 의료제품**(非디지털) **관리체계**(제조·수입, 품질관리 등)는 새로운 영역인 **디지털 의료제품을 관리·평가**하는데 **한계**

○ **(개선) 디지털 의료기기 특성**에 맞는 **관리체계** 구축 추진

- ❶(단기)**혁신의료기술 선정** 이후 **후속절차**(보건복지부 고시*) **개선**

  * 선정 기술목록을 당초 '고시'에서 '공표' 형태로 전환 ☞ 시장진입 기간 단축 (기존) 40일 → (개선) 20일

  ▪ (중장기)식약처 허가 이후 **한시적 비급여 先사용 - 後의료기술평가** 등 혁신 의료기술의 **'시장 先진입 체계' 마련** 검토

- ❷「**디지털의료제품법**('24.1 제정)」 **하위법령** 및 **가이드라인** 마련을 통해 **디지털의료제품 특화 관리체계** 구축

⇒ **디지털의료기기**에 특화된 관리체계 구축으로 **신시장 활성화** 기대

【 조치계획 】 ❶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('24.上)
❷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위 법령 및 가이드라인 마련('24.下)

2 임직원 건강관리시장(B2B)에 디지털헬스케어 진출기반 마련 복지부·인사처

○ **(현황)** 디지털헬스케어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**기업 수요***(B2B) **확대** 및 **초기시장 개척**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

* 기업 임직원 건강관리 시장은 새로운 헬스케어 수요처로 성장 가능

▶ **C社** "많은 기업이 ESG 경영을 강조하며 임직원 건강관리에 몰두, 다만, 혜택·가이드라인 등 부족.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이 참여하는 환경조성 필요"

○ **(개선)** ❶**건강친화기업 인증제*** 제도 개선, ❷**공공 부문 맞춤형 복지제도**에 **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시범도입** 추진

*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6조의2에 따라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인증(인증마크)하는 제도로 홍보지원, 他인증제(여가친화인증 등)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

❶ 상기 인증제 **인증기업**의 디지털헬스케어 활용 **우수사례 공유***, **인증혜택 확대** 등 통해 임직원 건강관리 대한 기업관심 유도

* 보도자료 배포, 성과대회 개최, 인증심사단 대상 교육 등

❷ **공공 부문**(중앙행정기관 등) **맞춤형 복지제도**(복지포인트)에서 **'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'를 선택** 가능토록 **운영**

⇒ **디지털헬스케어 산업** 성장을 뒷받침할 **新시장 개척·확보**

【 조치계획 】 ❶디지털헬스케어 활용 우수사례 공유 및 인증혜택 확대('24~)
❷공공 맞춤형 복지제도에 디지털헬스케어 시범도입('24.下)

3 DTC* 유전자 검사 관련 2차서비스 활용 기반 마련 복지부

* 소비자 직접 판매(Direct-To-Consumer)

○ **(현황)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활용**한 **2차 서비스*** 안내를 위한 **가이드라인 미비**

* (예) 유전자 검사 결과 유전자 변이(체지방 축적, 에너지 대사 등 문제) 확인 → 지방분해·식욕조절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추천, 정기적인 운동·검진 제언

- **DTC 유전자 검사**와 관련 **2차 서비스 산업**의 **연계**가 **어려워** 유전자 검사 등 **바이오테크 산업 발전**이 **지연**

○ **(개선)** 유전자 검사의 **2차 서비스 활용 방안**에 대한 구체적인 **연구용역**(~'24.1월) 결과를 바탕으로 **가이드라인 개정**(6월)

⇒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활용한 2차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해 **바이오테크 시장 확대**에 기여

【 조치계획 】「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항목 신청 가이드라인」 개정('24.6월)

4 의약품 견본품의 소분 포장 가능 여부 명확화 복지부

○ **(현황)** 약사법상 **의약품 공급자**는 **요양기관**으로부터 **견본품 제공 요청**을 받은 경우, **최소단위** 포장의 제품을 **개봉·소분없이 지급**

- 최소 포장단위가 크거나 고가의 의약품인 경우*에도 **견본품 확인 후**에는 **폐의약품으로 처리**하여 과도한 **비용 부담**과 **폐기물** 발생

* (예) 1,000ml 시럽제 또는 1,000T 정제 등 대량·고가 제품

○ **(개선)** 제조사 측에 **견본품용 소포장 품목**을 **별도로 허가**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설명(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품목 허가시 포장규모에 대한 제한 無)

⇒ 의약품 제조·수입업자의 **견본품 지급 비용 부담 완화**

【 조치계획 】 협회·건의기업 간담회·질의회신 등을 통해 의견서 마련('24.1분기)

5 첨단전략산업 · 우주 (4건)

1 (반도체) 장비 수리부품 통관기간 단축 국표원

○ **(현황)** 반도체 생산설비 장해 복구를 위해 수리부품 국내 반입시 **안전인증 면제승인 절차*** 진행 과정에서 **통관 지연 가능성**

* 「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(제23조)」 수입 통관시 **필수 절차**로 제품 설명서, 선적서류,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**면제승인**을 받아야 함

- **반도체 공정 특성을 고려**한 안전인증 면제승인 **절차 개선** 요청

▶ **A社** 24시간 연중무휴로 가동되는 반도체 공정 특성상 최대한 신속히 국내 반입해야 하나, 공휴일에는 면제승인 절차가 정지되어 통관 및 수리 지연

○ **(개선)** 심사·승인 **소요기간을 최적화**하여 반도체 생산설비 수리부품 **적기공급 지원**

- 반도체 생산설비 수리부품의 경우 **공휴일에도 수입 통관이 가능**하도록 **긴급처리 절차(Fast track)*** **도입**

* 사전에 긴급처리 신청(예: 긴급처리 요청서 제출)한 경우 면제승인 先검토

⇒ 장비 수리부품의 신속한 통관을 통해 **반도체 생산 경쟁력 제고**

【 조치계획 】 반도체 수리부품 안전인증 면제승인 긴급처리절차 도입('24.4월)

2 (이차전지) 특화단지 용수시설 확충 환경부

○ **(현황) 울산 이차전지 첨단산업 특화단지** 입주기업에 대한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**온산 정수장*** **시설증설**이 필요

* (시설용량) 총34.1만톤, (일일 여유량) 5.4만톤, (공급기업) 총 122개

▶ **B社** 동 회사 온산제련소는 하루 3만 9천톤의 공업용수를 사용 중 → 최근 착공한 니켈제련소가 가동될 '27년에는 하루 1만톤 이상 추가 소요 예상

○ **(개선)** 입주(또는 예정) 기업 대상 **공업용수 수요 예측조사, 온산 국가산단 개발계획승인** 결과를 토대로 온산 정수장 신·증설 등 **초과 수요량에 대한 용수공급방안** 마련

* 신·증설 필요시 국가수도기본계획 반영('25, 환경부), 기본구상 등 후속절차 추진('25~, 수자원공사)

- **공급 효율성 확보** 차원에서 **용수공급방안 마련 연구용역** 우선 추진('24)

⇒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을 통해 **이차전지 산업 경쟁력** 제고

【 조치계획 】 온산 정수장 용수공급방안 연구용역 추진('24년)

3 (우주) 민간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과기정통부

○ **(현황)** 우주개발사업의 **사업추진 방식, 위성시스템 독자 구축** 및 **성공이력 확보 제한** 등이 민간 우주기업 **생태계 조성**에 **걸림돌**

❶ (**사업방식**) 현행 R&D방식으로 추진중인 우주개발사업은 첨단 기술 축적에 도움이 되나, 기업의 **매출증대에는 한계**가 존재*

* 조달계약과 달리, R&D 협약방식은 기업의 매출계상이 제한되며, 기업이윤 및 일부비용(일반관리비, 간접비 등) 획득이 곤란

▶ **C社** "기업이 국가 우주개발사업 R&D에 참여시 R&D 비용은 기업의 매출에 기여하지 못하므로, 우주개발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"

❷ (**위성영상**) 기존 방송통신, 기상, 연구 등 공공목적의 위성제작 중심 사업*에서 **민간 서비스** 중심으로 **산업확대** 필요

* 국토부(차세대중형위성1호), 기상청(천리안2A), 해수부·환경부(천리안2B) 등

▶ **D社** "위성활용기관에서 시스템 구축이 아닌, 민간기업 서비스 구매를 통해 공통부분 중복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이 필요부분에 집중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 가능"

❸ (**발사체**) 창업기업이 발사체 시험발사 성공하였으나, **트랙레코드**를 확보하지 못해 **해외 진출에 애로**

* 例) ①**(유럽)** 엔진개발 단계에서 국가와 공공탑재체 발사 등 계약(조건부) 체결, ②**(美. SpaceX)** 발사체 1단 재사용 시험 성공('15년) 후 나사와 수조원대 계약 체결

▶ **E社** "소형발사체 시험발사에 성공('23.3)하였으나, 국내 공공사업 수주 이력이 없어 해외 위성 수주 영업활동에 제한"

○ **(개선)** 민간 우주기업의 **자생력 확보**를 위한 **사업 참여방식 다양화, 위성영상 시장 확대, 창업기업 지원** 등 대책 마련

❶ **우주개발사업** 추진시 R&D협약 외 **계약방식** 등 **다양한 방식** 활용

❷ **민간 위성영상 서비스**에 대한 **시장 확대 방안** 마련

❸ 우주 분야 창업기업(발사체)에 대한 **지원방안 마련**

⇒ 민간 우주산업의 **기초체력 확보** 및 **글로벌 경쟁력 향상**

【 조치계획 】「제3차 우주산업화 전략(`24~`28)」 수립('24.上)

4 (항공) 항공기 관련 사업 등록 시 자본금 요건 완화[국토부]

○ **(현황)** 현행 「항공사업법 시행규칙」은 **항공기 관련 사업 등록**시 **업종별**로 **일정금액 이상의 자본금**을 납입하도록 규정*

* (항공기정비업)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등

○ **(개선) 항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**에서 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**자본금 요건 완화** 검토(24년~)

⇒ **항공산업의 시장진입 활성화** 기반 마련

【 조치계획 】「항공사업법 시행령」 개정 검토 및 추진('24년~)

6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 (7건)

1 '장롱면허자' 대상 도로운전 연수 제도화[경찰청]

○ **(현황)** 도로에서 **자동차 운전 연수 서비스***를 **유상으로 제공**하려면 **자동차운전학원 등록** 필요(도로교통법)

* 운전면허를 旣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도로 운전 교육 제공

- **운전면허 보유자 대상 운전 연수**에 대한 **별도 유형 구분이 없어,** 일반적인 **자동차운전학원과 동일**한 **시설***을 갖추어야 등록 가능

* 학과교육 강의실, 기능교육장 등 구비 필요 → 현재 유상으로 제공되는 도로 운전 방문연수 서비스는 대부분 미등록 불법 운영

○ **(개선) 운전면허를 旣취득한 사람만을 대상**으로 하는 **별도 유형***의 **자동차 운전 연수 서비스**를 신설하는 등 **도로연수 교육체계 개선**

* (예) 해당 유형으로 영업등록 시 강의실, 기능교육장 등 시설요건 면제

- **도입효과, 도입시 구체적인 등록 기준** 관련 **연구용역 추진('24.上)**

⇒ **음성화된 불법 도로 연수를 근절**하여 도로 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제고 + **도로연수** 관련 **플랫폼 서비스 시장 확대**

【 조치계획 】 연구용역을 거쳐 「도로교통법」 개정 검토('24년)

2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서비스 허용 농식품부

○ **(현황) 반려동물 운송서비스**를 제공하려는 사업자가 **자기 소유의 차량**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**동물운송업 등록** 허용

- **차량 구입비용 부담** 등으로 **다수 차량 운영**을 통한 **권역 또는 전국 단위 플랫폼 기반 운송서비스 사업**에 제약

○ **(개선)** ❶**렌터카를 활용**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*하는 경우에도 **동물운송업 등록**이 가능하도록 **실증특례 부여****(旣조치, '23.12월)

* (예) A사가 B렌터카 업체와 계약을 통해 운송차량 00대를 대여하여 운송서비스 제공

** (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서비스) K社(서울), C社(경기) 등 2개 업체

- ❷안전성 등에 대한 **실증특례 검증 결과**를 바탕으로 **렌터카를 활용**한 **동물운송업**(반려동물 운송서비스) **등록 기준 마련**(~'25년)

⇒ **반려산업 분야 신사업 창출** 지원 및 **반려동물 양육자**의 **이동 편의** 제공

【 조치계획 】 ❶**관할 지자체 협의를 거쳐 실증특례 부여(旣조치, '23.12월)**
❷**렌터카 활용 동물운송업 등록기준 마련('25년) 및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개정**

3 방송 광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방통위

○ **(현황) 방송광고의 종류**를 **7가지***로 제한하고 **다른 유형의 광고는 불허**

- **방송 시청방식 변화**에 맞는 **新유형 광고****의 **시장 진입 제한**

* 1개의 방송프로그램 중간에 삽입되는 중간광고, 프로그램 내에서 상품·상표 등을 노출시키는 간접광고 등(「방송법」제73조제2항각호)

** (예) 디지털TV 채널변경시 발생하는 지연시간(1~2초)에 노출되는 채널변경광고(재핑광고)

○ **(개선)** 방송광고의 종류를 **방송프로그램 내·외 광고, 기타 광고**로 간소화하고 **새로운 유형의 방송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(Negative)**

⇒ 방송 사업자의 **자유로운 사업활동 지원** 및 **광고업계 시장영역 확대**

【 조치계획 】「방송법」 개정안 발의('24.10월)

4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유아용 바운서 안전기준 개정 국표원

○ **(현황)** 유아용 바운서*에 대한 **국제 안전기준이 완화****되었으나, **국내에는 반영되지 않아** 국제기준에 맞는 제품임에도 **판매 불가**

* 아기 스스로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위아래로 튀어 오르는 작동을 하여 놀이와 휴식을 제공하는 유아용 제품

** (EU·美) 유아용 바운서의 등받이 각도를 **'30~80도'에서 '10~80도'로 완화**('09~)

○ **(개선)** 유아용 바운서의 등받이 각도 등을 **국제기준에 맞게 개정***

* (현행) 30~80도 → (개선) 10~80도

⇒ **글로벌 스탠다드**에 맞추어 **다양한 유아용 제품이 시장에 진입**할 수 있도록 허용

【 조치계획 】「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」 개정안 마련('24년)

5 중기제품 성능인증 제도 개선 중기부

○ **(현황)** **既인증된 제품**에서 **일부 제원만 변경**한 **유사·후속 모델**에 대해서도 **추가 성능인증**시 **전체 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**

* (예) 성능인증을 받은 전광판 제품에서 화면 크기만 변경한 유사모델 성능인증시 전원공급·센서 등 성능 변경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도 시험성적서 제출 필요

○ **(개선)** **일부 제원 변경**의 경우 **제원변경과 관련된 항목**에 한해 **시험성적서**를 **제출**하여 인증 신청기업의 **비용부담 완화**

* (예) 전광판 화면 크기 변경과 관련된 색도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만 제출하고, 기존 제품과 성능이 동일한 전원공급·센서 등 항목은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

⇒ **중소기업 신제품·신기술의 시장진입**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

※ (참고) 중기제품 성능인증 제도

○ **(개요)**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

○ **(대상)** 특허·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, 관련 법령에 따라 신제품(NEP)·신기술(NET) 인증을 받아 제조한 제품 등

○ **(혜택)** 성능인증 제품은 우선구매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 부여

○ **(유효기간)** 최초 3년 부여, 연장 사유가 인정되면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*

* 「판로지원법」 개정('24.1.25)에 따라 최초 4년 부여,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('24.8.21 시행)

【 조치계획 】「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」 개정('24.3분기)

6 전동 지게차의 제조현장 내 진입 여건 명확화 산업부

○ **(현황)** 조선소 등 산업현장에서 리튬 배터리 기반의 **전동 지게차 활용**을 **확대***하고자 하나, **기존 충전인프라 활용 가능 여부**에 대한 **불확실성** 등으로 **도입에 제약**

* ESG 경영 확산 등을 위해 친환경적인 전동 지게차 활용 유인이 큼

○ **(개선)** 친환경자동차법령상 **산업현장 등**의 **전기차 충전인프라**를 **전동지게차 충전**에 활용하는 것이 **가능함**을 **명확히 설명**

⇒ 제조현장의 **친환경 전환 가속화** 및 전동 지게차 **제조설비 등 시설투자 확대** 기반 마련

[조치계획] 협회·건의기업 질의회신 등을 통해 답변('24.上)

7 농업용 지게차의 농업기계 분류 국토부·농식품부

○ **(현황) 농가**에서 사용하는 **지게차**는 일반 지게차와 동일하게 **건설기계***로 **분류**

*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[별표1] 건설기계의 범위

- 농작물 운반, 창고 정리 등 **제한적 용도로 사용**함에도 일반 건설기계와 같이 **취·등록세 납부** 및 **정기검사** 등 **의무 부과**

○ **(개선) 관계부처 협의**(기재부·농식품부·국토부) 및 **이해관계자 간담회** 등을 통해 농업용 지게차의 **농업기계 분류 방안*** **마련**

* 견인능력, 운행범위 등을 고려하여 농업용으로 주로 활용되는 지게차를 별도 분류 (예: 1톤 미만 굴착기 및 4톤 미만 로더는 농업기계로 旣분류한 사례 감안)

⇒ 지게차를 사용하는 **농민들의 부담 완화** 및 농업용 지게차 보급 확대를 통한 **농업 생산성 향상**

[조치계획] 농업용 지게차의 농업기계 분류방안 마련('24.上) 후 관계법령 개정

Ⅲ. 과제별 향후 추진계획

추진 과제	소관부처	추진일정
1. 핀테크 (5건)		
1-1. 외환서비스 업종 확대 *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 및 「외국환거래규정」 개정	기재부	'24년
1-2. 거주자 간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추진 * 금융규제 샌드박스 상정	기재부	'24.上
1-3. 송금목적의 단기 예치 허용 *「외국환거래규정」 개정	기재부	'24.上
1-4. 비금융회사 외환서비스 확대 기반 마련 *「외국환거래규정」 개정	기재부	'24.上
1-5. 금융·보험사의 보유 주식 의결권 제한 완화 *「공정거래법」 개정안 발의	공정위	'24.4분기
2. 로봇·디지털 전환 (8건)		
2-1. 방역 로봇의 시장진입을 위한 제도 정비 *「방역소독지침」 개정 추진	질병청	'24.4분기
2-2. 경찰관서의 순찰 로봇 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*「순찰로봇 운용을 위한 세부지침」 제정	경찰청	'24년
2-3. 의료용 로봇의 해외 진출 지원 강화 * 기업 대상 해외인증 취득 全과정 지원 확대	산업부	'24년
2-4.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 로봇 보급·확산 * 서빙로봇 및 연관 SW 패키지 보급 지원	중기부	'24년
2-5. 스마트팩토리 초기 구축시 필요한 정보, 컨설팅 등 제공 * 제조혁신(DX) 포털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(ISP) 준비	중기부	'24.上
2-6. 제조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* 한국형 제조데이터 활용 표준모델 50개 마련	중기부	'24.下

추진 과제	소관부처	추진일정
2-7. 항만 자동화시 국내기술 활용 확대 * 신규 개발 주요 항만(광양항 등)에 국산 항만장비 도입·활용 확대	해수부	'24~'25년
2-8. 수직농장 시설에 적합한 지원제도 마련 * ❶「농지법령」 개정 추진 ❷「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」 개정 검토 ❸「스마트농업법」 하위법령에 수직농장 관련 규정 신설	❶❸농식품부 ❷기재부	'24년
3. 인공지능(AI)·통신 (5건)		
3-1.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제도 부담완화 * 「SW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」 개정	과기정통부	'24.6월
3-2. AI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AI 체험환경 조성 * 지자체 주도 AI·데이터 활용 서비스 과제 발굴	과기정통부	'24.上
3-3. 파견관제 업무를 클라우드 기반 원격관제로 전환 * 원격 보안관제의 기술적 검증 정책 연구용역	과기정통부	'24.下
3-4. CCTV 영상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* 「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」 개정	개보위	旣조치
3-5.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제조업 겸업 제한 폐지 *「전기통신사업법」 개정안 발의	과기정통부	旣조치
4. 헬스케어 (4건)		
4-1. 디지털 의료기기 특성에 적합한 관리체계 마련 * ❶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❷「디지털의료제품법」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 마련	❶복지부 ❷식약처	❶'24.上 ❷'24.下
4-2. 임직원 건강관리시장에 디지털헬스케어 진출기반 마련 * ❶디지털헬스케어 활용 우수사례 공유 및 인증혜택 확대 ❷공공 맞춤형 복지제도에 디지털헬스케어 시범도입	❶복지부 ❷인사처	❶'24년~ ❷'24.下
4-3. DTC 유전자 검사 관련 2차 서비스 활용 기반 마련 * 「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항목 신청 가이드라인」 개정	복지부	'24.6월
4-4. 의약품 견본품의 소분 포장 가능 여부 명확화 * 협회·건의기업 간담회·질의회신 등을 통해 의견서 마련	복지부	'24.1분기

추진 과제	소관부처	추진일정
5. 첨단전략산업·우주 (4건)		
5-1. 반도체 장비 수리부품 통관기간 단축 * 반도체 수리부품 안전인증 면제승인 긴급처리절차 도입	국표원	'24.4월
5-2. 이차전지 특화단지 용수시설 확충 * 온산 정수장 용수공급방안 연구용역 추진	환경부	'24년
5-3. 민간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* 「제3차 우주산업화 전략('24~'28)」 수립	과기정통부	'24.上
5-4. 항공기 관련 사업 등록 시 자본금 요건 완화 * 「항공사업법 시행령」 개정 검토 및 추진	국토부	'24년
6.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서비스 분야 (7건)		
6-1. '장롱면허자' 대상 도로운전 연수 제도화 * 연구용역을 거쳐 「도로교통법」 개정 검토	경찰청	'24년
6-2.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서비스 허용 * 렌터카 활용 동물운송업 등록기준 마련 및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개정	농식품부	'25년
6-3.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* 「방송법」 개정안 발의	방통위	'24.10월
6-4.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유아용 바운서 안전기준 개정 * 「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」 개정안 마련	국표원	'24년
6-5. 중기제품 성능인증 제도 개선 * 「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규칙」 개정	중기부	'24.3분기
6-6. 전동 지게차의 제조현장 내 진입여건 명확화 * 협회·건의기업 질의회신 등을 통해 답변	산업부	'24.上
6-7. 농업용 지게차의 농업기계 분류 * 농업용 지게차의 농업기계 분류방안 마련	국토부 농식품부	'24.上

참 고 과제별 부처 담당자

과제명		부처명	담당과장	담당자
1-1	외환서비스 업종 확대	기재부 외환제도과	정여진 과장 044-215-4750	안근옥 사무관 goahn@korea.kr
1-2	거주자 간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추진	기재부 외환제도과	정여진 과장 044-215-4750	안근옥 사무관 goahn@korea.kr
1-3	송금목적의 단기 예치 허용	기재부 외환제도과	정여진 과장 044-215-4750	안근옥 사무관 goahn@korea.kr
1-4	비금융회사 외환서비스 확대 기반 마련	기재부 외환제도과	정여진 과장 044-215-4750	안근옥 사무관 goahn@korea.kr
1-5	금융·보험사의 보유 주식 의결권 제한 완화	공정위 기업집단결합정책과	이병건 과장 044-200-4932	김선영 사무관 sunkim92@korea.kr
2-1	방역 로봇의 시장진입을 위한 제도 정비	질병청 감염병정책총괄과	하진 과장 043-719-7120	김민선 사무관 minkind@korea.kr
2-2	경찰관서의 순찰 로봇 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	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	임성순 과장 02-3150-2046	한승일 계장 s1han@police.go.kr
2-3	의료용 로봇의 해외 진출 지원 강화	산업부 기계로봇항공과	조웅환 과장 044-203-4310	박형태 사무관 pp87@korea.kr
2-4	소상공인 대상 서비스 로봇 보급·확산	중기부 디지털소상공인과	김민지 과장 044-204-7870	이진영 사무관 hebegins@korea.kr
2-5	스마트팩토리 초기 구축시 필요한 정보 컨설팅 등 제공	중기부 제조혁신과	권순재 과장 044-204-7260	이일준 사무관 iljoony2@gmail.com
2-6	제조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	중기부 제조혁신과	권순재 과장 044-204-7260	허연 사무관 chemwizard@korea.kr

과제명		부처명	담당과장	담당자
2-7	항만 자동화시 국내기술 활용 확대	해수부 항만정책과	장기욱 과장 044-200-5910	추윤식 사무관 cyswolrd00@korea.kr
		해수부 항만개발과	황상호 과장 044-200-5930	김하성 사무관 haski@korea.kr
		해수부 항만기술안전과	전충남 과장 044-200-5950	김동영 사무관 officialkim@korea.kr
2-8	수직농장 시설에 적합한 지원제도 마련	농식품부 농지과	이정석 과장 044-201-1731	이상진 사무관 hanst99@korea.kr
		농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	이정삼 과장 044-201-2411	이정기 사무관 yahu0202@korea.kr
		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	최진규 과장 044-215-4120	이건위 주무관 gwl9021@korea.kr
3-1	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제도 부담완화	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	장두원 과장 044-202-6330	박선경 사무관 sk0918@korea.kr
3-2	AI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AI 체험환경 조성	과기정통부 디지털사회기획과	김수정 과장 044-202-6130	정현석 사무관 kohedz@korea.kr
3-3	파견관제 업무를 클라우드 기반 원격관제로 전환	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	정은수 과장 044-202-6450	부영희 사무관 b3340008@korea.kr
3-4	CCTV 영상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	개보위 데이터안전정책과	태현수 과장 02-2100-3071	주문호 사무관 mhjoo21@korea.kr
3-5	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제조업 겸업 제한 폐지	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	마재욱 과장 044-202-6620	김지혜 사무관 wizdom623@msit.go.kr
4-1	디지털 의료기기 특성에 적합한 관리체계 마련	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	오상윤 과장 044-202-2450	이동우 사무관 williamdongwoolee @korea.kr
		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	성홍모 과장 043-719-3752	조아라 사무관 arahcho@korea.kr
4-2	임직원 건강관리시장에 디지털헬스케어 진출기반 마련	복지부 건강증진과	정연희 과장 044-202-2820	이지현 사무관 muguek@korea.kr
		인사처 연금복지과	문일곤 과장 044-201-8410	박혜정 사무관 dodream91@korea.co.kr

과제명		부처명	담당과장	담당자
4-3	DTC 유전자 검사 관련 2차 서비스 활용 기반 마련	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	성재경 과장 044-202-2610	김다혜 사무관 glorie01@korea.kr
4-4	의약품 견본품의 소분 포장 가능 여부 명확화	복지부 약무정책과	남후희 과장 044-202-2490	김수연 사무관 suyean02@korea.kr
5-1	반도체 장비 수리부품 통관기간 단축	국표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	이응로 과장 043-870-5440	이의만 사무관 lee3824@korea.kr
5-2	이차전지 특화단지 용수시설 확충	환경부 물이용정책과	이정용 과장 044-201-7140	박민영 사무관 lucy13@korea.kr
5-3	민간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	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	정민원 과장 044-202-4620	조성헌 사무관 shjo74@korea.kr
5-4	항공기 관련 사업 등록 시 자본금 요건 완화	국토부 항공산업과	김영혜 과장 044-201-4219	송태호 사무관 sth01790@molit.go.kr
6-1	'장롱면허자' 대상 도로운전 연수 제도화	경찰청 교통기획과	이서영 과장 02-3150-2051	강진태 경위 rkdwlsxo12@police.go.kr
6-2	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서비스 허용	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	김현우 과장 044-201-2651	강종수 사무관 joneskang@mifaff.go.kr
6-3	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	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	전혜선 과장 02-2110-1270	김지은 사무관 je0918k@kcc.go.kr
6-4	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유아용 바운서 안전기준 개정	국표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	오재철 과장 043-870-5450	한석훈 주무관 hun1110@kats.go.kr
6-5	중기제품 성능인증 제도 개선	중기부 판로정책과	조성우 과장 044-204-7501	김경배 사무관 lkaiser72@korea.kr
6-6	전동 지게차의 제조현장 내 진입 여건 명확화	산업부 자동차과	이영호 과장 044-203-4430	하창우 주무관 ipio864@motie.go.kr
6-7	농업용 지게차의 농업기계 분류	국토부 건설산업과	윤종빈 과장 044-123-4567	최찬 서기관 chanchoi@molit.go.kr
		농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	문태섭 과장 044-201-1891	이현 사무관 hyun8338@korea.kr